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22
----------	------

2025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 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이해경)

- 안건번호 제2822호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1,361억원을 편성하여 26건, 363억원을 지출 결정 후 363억원을 지출하였음
 -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112억원이며, 20건, 317억원을 지출결정 후 317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미디어재단 TBS 운영비 지원 93억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비 지원 22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49억원을 편성하여 6건, 45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주요 지출내역은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1억원 등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5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예비비 결산 개요

- '24회계연도 예비비는 1,36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362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62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결 정 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지 출 잔 액 (가)-(나)-(다)
합	계	136,102	36,269	36,263	-	7 ^{주2)}
일	반 회 계	111,231	31,741	31,735	-	7 ^{주2)}
특	별 회 계 ^{주1)}	24,871	4,527	4,527	-	0 ^{주2)}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잔액은 6,26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9천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04 ('25. 5. 2)

3.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자금으로 관련 법령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에도 지난 '25년 5월,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일반예비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회계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한도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각 회계별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를 준수한 **일반예비비** 1,040억 8,000만원과 편성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2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1,040억 8,000만원)보다 120억 2,100만원 증액조정함에 따라 전체 예비비 편성규모가 총 1,361억 200만원으로 증가된 것임

〈표 3-2〉 2024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주1)} 을 통한 증감조정액	최종예산	
	예비비 예산액 (구성비) ^{주2)}	예산총액		예비비 예산액 (구성비) ^{주2)}	예산총액
총 계	124,080 (0.27)	45,740,517	12,021	136,102 (0.28)	47,414,393
일 반 회 계	100,550 (0.30)	33,049,200	10,680	111,231 (0.32)	34,246,379
일 반 예 비 비	80,550 (0.24)		10,680	91,231 (0.26)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0.06)		-	20,000 (0.05)	
특 별 회 계	23,530 (0.18)	12,691,316	1,341	24,871 (0.18)	13,168,013
기 타 특 별 회 계	13,195 (0.12)	10,869,493	1,341	14,536 (0.12)	11,254,167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 (0.00)	2,051,854	-	- (0.00)	2,127,178
교통사업특별회계	1,467 (0.09)	1,544,935	122	1,589 (0.09)	1,731,74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50 (0.33)	223,450	111	862 (0.38)	224,692
주택사업특별회계	2,981 (0.13)	2,230,740	31	3,012 (0.12)	2,440,978
도시개발특별회계	5,055 (0.30)	1,676,510	868	5,924 (0.34)	1,694,889
균형발전특별회계	877 (0.49)	178,751	110	987 (0.55)	176,62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4 (0.39)	8,658	36	71 (0.74)	9,5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00)	1,915,163	-	- (0.00)	1,790,363
한강수질개선허특별회계	322 (0.99)	32,458	△46	275 (0.85)	32,100
소 방 특 별 회 계	1,705 (0.16)	1,006,971	107	1,813 (0.17)	1,026,00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335 (0.56)	1,821,823	-	10,335 (0.54)	1,913,845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 (1.00)	970,000	-	9,700 (1.00)	97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5 (0.07)	851,823	-	635 (0.06)	943,845

주1) '24. 5.27 제출, '24. 6.25 본회의 의결

주2) (구성비)는 예비비 예산액(편성액)이 예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근거 : ① '24년도 예산서 및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② '24회계연도 결산서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등 재구성

- '24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검토하면, 전체 예비비 예산액(1,361억 200만원) 중 26.6%, 362억 6,900만원(26건)을 지출결정하여 362억 6,300만원(26건)을 지출한 것으로,
 - 일반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는 예산액(912억 3,100만원) 중 34.7%, 317억 4,100만원(20건)을 지출결정하여 317억 3,500만원(20건)을 지출한 것임
 -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는 예산액(248억 7,100만원) 중 18.2%, 45억 2,700만원(6건)을 지출결정하여 45억 2,700만(6건)을 지출한 바,
 - 기타특별회계(10개) 중 예비비를 편성한 8개 회계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액(59억 2,400만원) 중 73.8%, 43억 7,500만원(5건)을 지출결정하여 43억 7,500만원(5건)을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7개 회계**는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예비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며,
 - **공기업특별회계(2개)**의 경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6억 3,500만원) 중 24.0%, 1억 5,200만원(1건)을 지출결정하여 1억 5,200만원(1건)을 지출하였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예비비 예산액(97억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지출결정이 되지 않아 예비비 예산액(200억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표 3-3〉 2024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액 ①	지출결정액 (구성비) ^{주3)} ②	지출액 ③	이월액 ④	지출잔액 ^{주1)} ⑤-③-④	미결정액 ^{주2)} (구성비) ^{주3)} ①-②
총 계	136,102	36,269 (26.6)	36,263	-	6	99,833 (73.3)
일 반 회 계	111,231	31,741 (28.5)	31,735	-	6	79,489 (71.4)
일 반 예 비 비	91,231	31,741 (34.7)	31,735	-	6	59,489 (65.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0.0)	-	-	-	20,000 (100.0)
특 별 회 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기 타 특 별 회 계	14,536	4,375 (30.0)	4,375	-	-	10,161 (69.9)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	-	-	-	-	-
교통사업특별회계	1,589	- (0.0)	-	-	-	1,589 (1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62	- (0.0)	-	-	-	862 (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3,012	- (0.0)	-	-	-	3,012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5,924	4,375 (73.8)	4,375	-	-	1,549 (26.1)
균형발전특별회계	987	- (0.0)	-	-	-	987 (1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1	- (0.0)	-	-	-	71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한강수질개선허특별회계	275	- (0.0)	-	-	-	275 (100.0)
소 방 특 별 회 계	1,813	- (0.0)	-	-	-	1,813 (1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335	152 (1.4)	152	-	-	10,182 (98.5)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	- (0.0)	-	-	-	9,700 (1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5	152 (24.0)	152	-	-	482 (75.9)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2)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3) “구성비”는 최종예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비율)임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가 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세분화되고 ② **일반예비비** 편성규모에 상한선(편성한도액)을 두게 된 것은 '15회계연도부터로, '14회계연도까지는 예비비를 ① 별도로 세분화하지 않고 ②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한선을 두되,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14년 5월, 일반적인 예비비에 대해서는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를 두되, 편성한도로 인해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는 별도로 한도 없이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기준 또한 개정됨에 따라 '15회계연도부터는 예비비를 편성한도액이 적용되는 **일반예비비**와 한도 없이 별도로 편성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예비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 요건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본질상 지출결정될 규모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 관련 법령과 기준이 개정된 취지와 예비비도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 중 일부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 예산액이 회계연도 중의 실제 지출결정 규모(지출결정액)와는 괴리되어 미결정액의 규모나 예산액 중 미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24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의 전체 예산규모는 직전회계연도(1,488억 7,100만원)보다 △8.5%, △127억 6,800만원 감소된

1,361억 200만원임에도, 미결정액의 규모는 직전회계연도(906억 6,100만원)보다 10.1%, 91억 7,100만원 증가된 998억 3,300만원이며, 그 결과 예산액 중 미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직전회계연도(60.8%)보다 12.5%p 증가된 73.3%로 확인되는 바,

〈표 3-4〉 회계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24회계연도~'22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액	지출결정액 (구성비) ^{주3)}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주1)}	미결정액 ^{주2)} (구성비) ^{주3)}
		㉠	㉡	㉢		㉡-㉢-㉣	㉠-㉡
2024	합 계	136,102	36,269 (26.6)	36,263	-	6	99,833 (73.3)
	일 반 회 계	111,231	31,741 (28.5)	31,735	-	6	79,489 (71.4)
	일 반 예 비 비	91,231	31,741 (34.7)	31,735	-	6	59,489 (65.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0.0)	-	-	-	20,000 (100.0)
	특 별 회 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일 반 예 비 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2023	합 계	148,871	58,209 (39.1)	55,111	173	2,924	90,661 (60.8)
	일 반 회 계	125,001	51,792 (41.4)	48,694	173	2,924	73,208 (58.5)
	일 반 예 비 비	105,001	47,442 (45.1)	44,411	173	2,857	57,558 (54.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350 (21.7)	4,283	-	66	15,649 (78.2)
	특 별 회 계	23,870	6,416 (26.8)	6,416	-	-	17,453 (73.1)
	일 반 예 비 비	23,870	6,416 (26.8)	6,416	-	-	17,453 (73.1)
2022	합 계	168,804	81,621 (48.3)	79,428	445	1,748	87,182 (51.6)
	일 반 회 계	147,070	70,995 (48.2)	69,349	12	1,633	76,074 (51.7)
	일 반 예 비 비	127,070	66,436 (52.2)	65,327	12	1,096	60,633 (47.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558 (22.7)	4,021	-	537	15,441 (77.2)
	특 별 회 계	21,733	10,626 (48.8)	10,078	432	115	11,107 (51.1)
	일 반 예 비 비	21,733	10,626 (48.8)	10,078	432	115	11,107 (51.1)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2)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3) “구성비”는 최종예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비율)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④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04 ('25. 5. 2)
 ⑤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이는 세출결산액 중 예비비를 통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 사례보다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의결된 대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 미결정액도 결국 세출결산 결과에는 불용액에 포함되므로 가능한 한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① 법령에 따른 편성한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② 과거의 지출결정 규모까지 고려하여 예비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지출결정 규모가 증가되어 추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서울시는 동 예비비가 처음 도입된 '15회계연도부터 '24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전체 예산규모는 대폭 증가되어 왔음에도, 예비비 편성규모는 매 회계연도 동일한 규모로 20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 예산액(200억원) 전액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한 '16회계연도와 예산액(200억원) 중 85.4%에 해당하는 170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3억 5,600만원을 지출한 '20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 '24회계연도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단 1원도 지출되지 못하고 세출결산상으로는 전액(200억원) 불용처리된 바,

〈표 3-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도입 이후 회계연도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출결정액 ②	8,748	20,000	27	-	-	17,087
지출액 ③	6,780	20,000	24	-	-	16,356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비율 ②/①	43.7	100.0	0.1	0.0	0.0	85.4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출결정액 ②	1,221	4,558	4,350	-	-	
지출액 ③	1,219	4,021	4,283	-	-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비율 ②/①	6.1	22.7	21.7	0.0	0.0	

주1) “예산액”은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2)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4월말 기준, 그 밖의 회계연도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04 ('25. 5. 2) 재구성

-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과 홍수, 한파와 폭염 등 자연재난이 증가되고 있으며, 화재와 붕괴, 폭발과 다중운집인파사고 그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복잡화·대형화되고 있어 재해·재난에 대해 적기에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 서울시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대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구호계정)**도 활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예비비**까지 활용하여 재해·재난에 대응하고 있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도입한 이후 10년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의 비율이 10% 미만인 회계연도가 6개년도로 검토되어 동 예비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25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는 지양”

하고 회계운용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된 바 있어,

- 향후에는 동 예비비로 200억원을 고정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필요시 적정한 편성규모를 재산정하여 한정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A〉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지출현황 ('25회계연도~'15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과목 ^{주1)}	예산액 ^{주2)}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주3)}	미결정액 ^{주4)}
		㉑	㉒	㉓	㉔	㉒-㉓-㉔	㉑-㉒
2025 (4월말 기준)	합 계	113,944	60,849	60,842	-	7,520	53,094
	일 반 예 비 비	93,944	60,849	60,842	-	7,520	33,09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4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11,231	31,741	31,735	-	6,267	79,489
	일 반 예 비 비	91,231	31,741	31,735	-	6,267	59,48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3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73,208
	일 반 예 비 비	105,001	47,442	44,411	173	2,857	57,55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350 ^{주5)}	4,283 ^{주5)}	-	66	15,649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2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76,074
	일 반 예 비 비	127,070	66,436	65,327	12	1,096	60,63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558 ^{주6)}	4,021 ^{주6)}	-	537	15,441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1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0,946	89,777	86,767	-	3,010	61,168
	일 반 예 비 비	130,946	88,556	85,547	-	3,009	42,38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221 ^{주7)}	1,219 ^{주7)}	-	1	18,778
	내 부 유 보 금	-	-	-	-	-	-

주1) 세출과목 중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함

주2) “예산액”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3) “지출잔액”은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4)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5) '23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취약계층 생활·이용시설에 대해 **한파** 대비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35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3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침수피해** 발현위험이 높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8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8억원)을 지출한 것임

주6) '22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코로나19** 관련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 및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해 27억 6,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3억 4,3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2년 10월말 발생한 **이태원사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1,3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7) '21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서울사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12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2억 1,900만원을 지출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04 ('25. 5. 2)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3-6B〉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지출현황 ('25회계연도~'15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과목 ^{주1)}	예산액 ^{주2)}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주3)}	미결정액 ^{주4)}
		㉑	㉒	㉓	㉔	㉕-㉓-㉔	㉑-㉒
2020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48,037	123,891	123,065	48	776	24,145
	일 반 예 비 비	128,037	106,804	106,709	45	49	21,23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7,087 ^{주5)}	16,356 ^{주5)}	3	727	2,912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9 (결산시점 기준)	합 계	211,937	161,411	161,349	-	61	50,526
	일 반 예 비 비	186,336	161,411	161,349	-	61	24,92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5,601	-	-	-	-	5,601
2018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96,981	30,678	30,125	-	553	166,303
	일 반 예 비 비	176,981	30,678	30,125	-	553	146,30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7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74,015	4,547	4,313	-	234	169,468
	일 반 예 비 비	154,015	4,520	4,289	-	231	149,49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27 ^{주6)}	24 ^{주6)}	-	2	19,973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6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2,029	129,230	128,982	-	247	22,799
	일 반 예 비 비	132,029	109,230	108,982	-	247	22,79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20,000 ^{주7)}	20,000 ^{주7)}	-	-	-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5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6,943	97,537	95,556	-	1,980	59,406
	일 반 예 비 비	136,943	88,788	88,775	-	12	48,15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8,748 ^{주8)}	6,780 ^{주8)}	-	1,967	11,251
	내 부 유 보 금	-	-	-	-	-	-

주1) 세출과목 중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함

주2) “예산액”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3) “지출잔액”은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4)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5) '20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병상 추가운영 등을 위해 170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63억 5,6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6) '17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지진안전점검단을 운영하기 위해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가금류 수매를 위해 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7) '16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16년 5월과 10월에 각각 구의역과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인해 지하철 이용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하철역사(9개소) 노후시설 정비, 승강장안전문 주요부품 조기교체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200억원)을 지출한 것임

주8) '15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메르스** 관련 방역물품 구매보급, 격리시설 운영, 진료·검사장비 구매, 대중교통에 대한 예방조치,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해 87억 4,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7억 8,000만원을 지출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04 ('25. 5. 2)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24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26건 중 15건은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 검토됨

〈표 3-7〉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주2)} (회계명)	지출결정액 (지출결정일)	지 출 액 (지출일)	지 출 사 유
합 계 (1 5 건)		23,627	23,627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일반회계)	399 ('24. 9.30)	399 ('24.10. 2)	○ 소송 2건(2024아11380, 2024카합32226)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일반회계)	231 ('24.11.19)	231 ('24.11.20)	○ 소송 7건(2024다208629 등)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시개발특별회계)	2,069 ('24. 5. 7)	2,069 ('24. 5. 9)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반회계)	311 ('24. 7.30)	311 ('24. 8. 1)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654 ('24.11. 1)	654 ('24.11. 7)	○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868 ('24.11.14)	868 ('24.11.22)	○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근교산 등산로 정비(배상금) (일반회계)	300 ('24. 1.16)	300 ('24. 1.16)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하던 중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산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강제집행의 강제압류해제를 위해 담보공탁금을 납부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근교산 등산로 정비 (일반회계)	52 ('24.10.22)	52 ('24.10.24)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의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금(3억 5,200만원) 중 5,200만원을 A에게 지급(판결금 중 3억원은 '24년 1월 예비비를 지출하여 납부한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 지급)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근교산 등산로 정비 (일반회계)	195 ('24.12.11)	195 ('24.12.16)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원고B에게 판결금을 지급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	사방시설 보수정비 (일반회계)	242 ('24.12.11)	242 ('24.12.13)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정원도시국 (북부공원지원센터)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일반회계)	18 ('24.11.14)	18 ('24.11.15)	○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대금 판결금 납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2 ('24.10.14)	152 ('24.10.17)	○ 서울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일반회계)	15,877 ('24. 7.26)	15,877 ('24. 7.31)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나,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이자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금을 기입함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하남천(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일반회계)	2,238 ('24.11.21)	2,238 ('24.11.28)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일반회계)	13 ('24.12.18)	13 ('24.12.23)	○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지급

주1) 사법절차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에 한정된 것이며, 행정 내부의 절차(재결 등)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제외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등 재구성

- 우리 시의회는 결산심사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요구하고 지출결정하는 사례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과 15건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일반예비비 전체 지출액(362억 6,300만원) 중 65.1%, 236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소송결과에 따른 필요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어 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결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인지 의문시됨

〈표 3-8〉 회계연도별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지출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소 송 결 과 에 따 른 예 비 비 지 출 액 ①	일 반 예 비 비 전 체 지 출 액 ②	전 체 지 출 액 중 소송결과에 따른 지출액 비율 ①/②
2 0 2 4	23,627	36,263	65.1
2 0 2 3	26,615	50,828	52.3
2 0 2 2	55,355	75,406	73.4
2 0 2 1	21,173	89,551	23.6
2 0 2 0	31,429	109,461	28.7

주1) ① 사법절차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에 한정된 것이며(재결 등 행정 내부의 절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제외한 것임), ② 해당 사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즉, 해당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제기된 소송이 없는 것)도 제외한 것임

주2) 모두 일반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서 '20회계연도부터 '24회계연도까지 소송결과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출된 사례는 없음(일반회계, 공기업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8 ('21. 3.24)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④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⑤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⑥ 각 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재구성

-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① 기준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재적인 제약사항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고, ② 사례집에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재원은 예비비 지출보다는 이용·전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표 3-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예비비의 지출제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 제43조)
 -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419

- 미래한강본부 소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1,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4년 12월 18일, **예비비** 1,3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12월 23일 지출한 것이나,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세부사업이 속한 단위사업(**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에서 총 39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단위사업에 포함된 통계목 중 시설비나 인건비 등 전용이나 변경이 제한되는 통계목을 제외하더라도 16개 통계목에서 동 예비비의 지출결정액(1,300만원) 이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판결금(1,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0〉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중 1,300만원 이상 불용된 통계목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불 용 액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미 래 한 강 본 부 청 사 시 설 개 선 및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6
		공 공 운 영 비 (201-02)	227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특 정 업 무 경 비 (204-02)	60
	독 섬 자 별 레 운 영 및 관 리	공 공 운 영 비 (202-02)	46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 공 운 영 비 (202-02)	16
	둔 치 및 화 장 실 청 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45
		사 무 관 리 비 (201-01)	168 ^{주2)}
		공 공 운 영 비 (202-02)	29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공 공 운 영 비 (202-02)	30
	녹 지 시 설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365
		재 료 비 (206-01)	56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 공 운 영 비 (202-02)	15
	한 강 펌 프 시 설 유 지 관 리	공 공 운 영 비 (202-02)	23
	한 강 공 원 질 서 운 영 유 지 관 리	공 공 운 영 비 (202-02)	105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10)	101
	화 장 실 유 지 관 리	사 무 관 리 비 (201-01)	591

주1) 전용·변경이 불가능한 통계목은 제외한 것임

주2) 불용액(1억 6,8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서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용·변경이 불가능한 재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과-6445 ('25. 4. 8) 재구성

- 따라서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가 예비비를 지출한 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예비비 지출에 있어 내재적인 제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중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24. 6.20)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나,

- 판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지급액이 가산됨에 따라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심에서 다투기에 앞서 판결금을 임시로 지급(가집행)하고자 '24년 7월 26일, 예비비 158억 7,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월 31일 지출한 사안임
- 그러나 동 예비비 지출사례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동 사업은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기재한 지출액과 지출잔액(집행잔액)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의 경우, 결산서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서류인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는 지출결정액(158억 7,745만 1,000원)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서류인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사용액(158억 7,745만 1,000원) 중 158억 7,745만 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0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기재된 ① 지출액과 ② 지출잔액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기재된 ① 지출액과 ② 집행잔액은 동일한 규모의 예비비(158억 7,745만 1,000원)를 집행한 결과로서 서로 수치가 일치될 필요가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390원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1〉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간 기재내용 비교

(단위 : 원)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기재내용 ㉠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기재내용 ㉡		차 액 ㉠-㉡
지 출 결 정 액	15,877,451,000	예 비 비 사 용 액	15,877,451,000	-
지 출 액	15,877,451,000	지 출 액	15,877,450,610	390
이 월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지 출 잔 액	-	집 행 잔 액	390	△390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는 의회의 승인(의결) 대상인 결산서로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각각 별도의 안전으로 제출·의결하고 있어 두 안전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할 수치가 서로 불일치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은 동 사업의 예비비 지출액과 잔액에 대해 각각 상이한 수치를 기재한 것으로,
 - 두 서류 간 차액은 비록 천원 미만의 소액(390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종료된 회계연도의 집행결과에 대해 결산서의 서류 간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중 최소 1개 안전에는 실제 사실관계(집행결과)와는 부합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서류 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의 승인여부와는 별개로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승인대상 안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둘째, 동 사업은 예비비를 지출하기에 앞서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사

료됨

- 동 사업은 '24년 6월 20일 1심 판결이 선고된 결과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금을 가집행하고자 단 1건에 대해 150억원 이상의 예비비(158억 7,700만원)를 지출한 사안으로,
 - 판결선고일 다음 날('24. 6.21)부터 전액 상환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지급액이 가산됨에도 사업부서(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① 7월 19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② 7월 22일, 예산부서에 예비비 사용을 요구하였으며, ③ 7월 23일, 예산부서로부터 사용을 승인받아 ④ 7월 26일, 예비비를 지출결정한 후 ⑤ 판결선고일('24. 6.20)로부터 1달 이상 경과한 7월 31일에서야 실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판결선고일('24. 6.20) 당시 우리 시의회에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판결금 지급일이 지체될수록 이자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조속한 가집행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비록 촉박한 일정이라고 할지라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시의회에 판결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증액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협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 의결 직후 신속집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은 예비비로 신규 세부사업을 신설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업구조화 사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수 있지만, 예비비 투입대상 사업이 기준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단위사업인 **보전지출**

(일반회계)의 하위에 판결금을 가집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신설하고 세출과목(편성목)은 배상금등(305)으로 설정한 것이나,

〈표 3-12〉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업구조화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조 직 명	단 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편 성 목	통 계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보 전 지 출 ^{주1)} (일반회계)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 환 소 송	배상금등 (3 0 5)	배 상 금 등 (305-01)	15,877	15,877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단위사업 중 **보전지출**에는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를 포함한 4개의 편성목 이외에는 둘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전지출**에 속할 수 없는 편성목인 **배상금등(305)**이 포함된 동 세부사업은 기존의 다른 단위사업에 속하도록 구조화하거나, 적정한 단위사업이 없다면 신규 단위사업을 추가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동 세부사업을 부적절한 기존 단위사업인 **보전지출**에 속하도록 구조화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한 예비비 운용사례로 판단됨

〈표 3-1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보전지출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 (통 계 목)
보 전 지 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원금 상환, 차관 상환, 기타 해외채무 상환
	예 치 금(602)	예치금
	반 환 금 기 타 (8 0 2)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03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대금 판결금 납부**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으로서 '24년 10월 14일, 예비비 1억 5,2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10월 17일 지출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1년 7월 준공된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공사의 시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24회계연도 중 판결이 선고('24. 8)되어 그 결과에 따라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이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중 “예비비 사용조서”에는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 결산서에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 및 검증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24년도 4/4분기에 예비비를 지출('24.10)한 것으로서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분기만료일('24.12.31)의 다음 달 말일('25. 1.31)까지 지출내역이 소관 상임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할 사안이나,

-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조례에 따른 보고기한('25. 1.31)이 경과한 시점인 2월 27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출시점을 경과한 '25년 6월 현재까지도 지출내역을 일체 보고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23회계연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메일로만 내역을 송부한 채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아 결산심사시 우리 시의회는 법령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서울시는 해당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제출한 바 있으나,

- '24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례에 따른 보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주관하는 물순환안전국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는 '24회계연도에 소관 세부사업인 **근교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소송결과에 따라 총 3건의 예비비를 지출한 바,

〈표 3-14〉 “근교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	지 출 일
합 계 (3 건)			548	548	-	-		
①	근교산 등산로 정비(배상금)	배상금등 (305-01)	300	300	-	-	'24. 1.16	'24. 1.16
②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배상금등 (305-01)	52	52	-	-	'24.10.22	'24.10.24
③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배상금등 (305-01)	195	195	-	-	'24.12.11	'24.12.16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등 재구성

- 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1심)에서 승소한 원고 A가 피고인 서울시의 예금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담보공탁금(3억원)을 납부하고자 '24년 1월 11일, 예비비 3억원을 지출결정한 후 같은 날 전액 지출하였으며,
- ②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금(3억 5,200만원) 중 3억원은 기 납부한 담보공탁금(3억원)을 회수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되, 부족분(5,20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24년 10월 22일, 예비비 5,2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4일 지출하였으며,
- ③ 원고 B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1억 9,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4년 12월 11일, 예비비 1억 9,5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6일 지출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준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예비비 지출사례(3건)는 기준에 계속 추진되어 온 세부사업인 **근교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근교산 등산로 정비**)을 그

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 당초 담보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①)는 별도의 세부사업인 **근교산 등산로 정비(배상금)**을 신설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사업구조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료됨
 - 그리고 사업부서는 담보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사업[**근교산 등산로 정비(배상금)**]을 신설하였음에도, 이후 판결금을 2차례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②와 ③)는 신설된 세부사업이 아닌 기존 세부사업(**근교산 등산로 정비**)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 동일 세부사업(**근교산 등산로 정비**)과 관련하여 동일한 성격(소송결과에 따른 금전 지급)의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단일한 세부사업이 아닌 여러 세부사업들[**근교산 등산로 정비**와 **근교산 등산로 정비(배상금)**]을 통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어 예비비 투입대상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일관성까지 결여된 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3건의 예비비 지출사례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충당한 재원을 세출과목(통계목) 중 **배상금등(305-01)**으로 설정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배상금등(305-01)**에 대해 ㉠ 손해배상금과 국가배상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따른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금을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은 **공공운영비(201-02)**로 통계목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담보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①)는 **배상금등(305-01)**이 아닌 **공공운영비(201-02)**로 통계목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기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예산과목(**배상금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향후 서울시는 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이나 전용·변경 등을 통해 집행 기관 내부에서 필요재원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심사와는 달리 의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2차적인 검증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과목으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소관 **웹3.0 기술 저변 확대**는 '23회계연도 중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주최한 “서울 웹3.0페스티벌 2023” 개최('23. 7.31~8. 2) 당시 수상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시상금을 서울시가 지급하기 위해 '24년 7월 16일,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월 22일 전액 지출한 것임

〈표 3-15〉 웹3.0 기술 저변 확대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통 계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 출 잔 액	지출결정일	지 출 일
기타보상금	150	150	-	-	'24. 7.16	'24. 7.22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동 사업의 경우,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는 행사 개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민간 공동주최자의 자금조달 실패에 따라 시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신속히 시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24년 7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요구서에도 민간 공동주최자가 자금조달에 실패함에 따라 발생한 예측불가능한 상황(시상금 미지급)이므로 서울시가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시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행사가 '23년 8월 2일, 종료 되었음에도 협약상 시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민간 공동주최자가 장기간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 서울시는 ① '23년 8월부터 9월까지 민간 공동주최자에게 시상금 지급 약속 확인을 받고, ② '23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협약이행 촉구 공문을 4차례 발송하였으며, ③ 그 밖에도 수상자 또는 민간 공동주최자와의 간담회('23. 9~10), 형사고발('23.11) 등을 통해 협약상 의무(시상금 지급)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 '23년 10월과 '24년 6월에는 공동주최자 간 협약에는 시상금 지급의무자가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외부로 시상금 지급자를 명시하여 공고한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도 공동주최자의 하나로서 수상자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검토하면 서울시가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상금(1억 5,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24년도 본예산('23.12 의결)이나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기간중 이라도 소요예산(1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 시상금 규모(1억 5,000만원)와 지급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예산 의결이후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으로서,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소관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은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북측의 쓰레기풍선(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예비비 1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한 것임

〈표 3-16〉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통 계 목	지출결정액 (지출결정일)	지 출 액 (지 출 일)	이월액	지출잔액 ^{주1)}	지 출 사 유
합 계 (4 건)		109,419,000	109,418,930	-	70	
1차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5,552,000 ('24. 8. 8)	45,551,650 ('24. 8. 8)	-	350	◦ 북측의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된 시민의 피해(12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
2차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4,324,000 ('24. 9.30)	34,323,720 ('24. 9.30)	-	280	◦ 북측의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된 시민의 피해(23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
3차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873,000 ('24.11.26)	20,873,240 ^{주2)} ('24.11.26)	-	△240 ^{주2)}	◦ 북측의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된 시민의 피해(17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
4차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8,670,000 ('24.12.13)	8,670,320 ^{주3)} ('24.12.13)	-	△320 ^{주3)}	◦ 북측의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된 시민의 피해(12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함

주2)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기재된 3차 지원의 지출액이 지출결정액보다 240원 크고, 지출잔액이 음수(△240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앞선 차수의 지원(1차~2차 지원)에서 발생된 잔액(630원) 중 240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출한 것까지 3차 지원의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주3)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기재된 4차 지원의 지출액이 지출결정액보다 320원 크고, 지출잔액이 음수(△320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앞선 차수의 지원(1차~3차 지원)에서 발생된 잔액(390원) 중 320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출한 것까지 4차 지원의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②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12980 ('24. 8. 2)
 ③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16188 ('24. 9.26) ④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19501 ('24.11.20)
 ⑤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20704 ('24.12.11) ⑥ '24회계연도 결산서 등 재구성

- 동 사업의 경우, '24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는 법령상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나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북측의 쓰레기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 '24년 6월 20일, 제3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예결위원의 서면질의를 통해 쓰레기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필요성 등이 강조된 바 있어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피해(쓰레기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함이 타당한 사례로 판단됨
- 다만,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예비비 지출에 따른 운용방식과 결산서 작성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비비는 지출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지출결정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기재하고, 그 결과 지출잔액도 음수로 표기되도록 한 것은 결산서를 부적절하게 작성한 사례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는 예산부서로부터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결정을 하여야 하고, 지출결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과 이월을 할 수 있어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지출잔액은 0 또는 양수가 될 수 있을 뿐 음수로 표기될 수 없음에도, 동 사업은 결산서 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3차 지원과 4차 지원에 대한 지출잔액을 음수로 기재한 것으로

■ 3차 지원과 4차 지원의 지출결정액에는 순수하게 해당 차수에 사업부서가 지출결정한 예비비 규모를 기재하면서도, 지출액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차수의 지출액뿐만 아니라 앞선 차수의 지출잔액을 재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지출한 규모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지출잔액이 음수로 표시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1차 지원과 2차 지원 시에 발생한 지출잔액을 후속 지원 시에 재활용하였다면 이는 후속 지원 시의 지출결정액을 집행한 결과가 아니라 1·2차 지원의 지출결정액 중 일부(지출결정액 중 지출·이월 후 남은 잔액)를 집행한 결과이므로 1·2차 지원의 지출액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은 1·2차 지원의 지출결정액 중 일부를 집행한 결과를 3·4차 지원의 지출액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함으로써 3·4차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례에 대해 지출결정된 규모보다 초과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결산서 작성사례로 사료됨

○ 그 밖에 ①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동법 시행

령은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실정법상 제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지난 '23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매칭시비를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어 결산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 '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등 실정법상 제약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 지난 결산심사시 우리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7〉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주1)}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명 ^{주2)}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주3)}
			구성비		지출건수	
합	계	36,269	(100.0)	36,263	26	6
물	순 환 안 전 국	16,030	(44.2)	16,030	2	-
홍	보 기 획 관	9,297	(25.6)	9,297	1	-
재	난 안 전 실	3,904	(10.8)	3,904	4	-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2,238	(6.2)	2,238	1	-
시	민 건 강 국	2,151	(5.9)	2,151	1	-
정	원 도 시 국	1,592	(4.4)	1,592	7	-
기	획 조 정 실	630	(1.7)	630	2	-
행	정 국	151	(0.4)	145	2	6
디	지 털 도 시 국	150	(0.4)	150	1	-
비	상 기 획 관	109	(0.3)	109	4	-
미	래 한 강 본 부	13	(0.0)	13	1	-

주1)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2) 지출결정액 규모가 큰 실·본부·국부터 작은 실·본부·국 순으로 정리한 것임

주3) 지출잔액을 원 단위까지 표기할 경우, 물순환안전국은 7만 4,720원, 재난안전실은 15만 4,697원, 정원도시국은 1,301원, 행정국은 626만 5,810원, 비상기획관은 70원, 미래한강본부는 312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본부·국은 지출결정액을 전액 집행하여 지출잔액이 0원임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5. 6.26.)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2822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361억 300만 원 중 362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62억 6,3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112억 3,100만원
- 지출결정액	317억 4,200만원
- 지출액	317억 3,5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6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3억 3,500만원
- 지출결정액	1억 5,300만원
- 지출액	1억 5,3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45억 3,600만원
- 지출결정액	43억 7,500만원
- 지출액	43억 7,5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

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